

대구지역 스포츠재활의학의 산업화를 위한 대구대학교와 The Humane Hospital간 산학협정서

대구대학교와 The Humane Hospital은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의 육성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의 상호관심과 이해분야에 관한 당사자간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협력활동) 본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가. 대구지역의 스포츠재활 사업 육성의 공동추진

- ① 대구지역 스포츠재활대상자의 조사 모니터링
- ② 병원 입원·외래 이용형태 조사
- ③ 각 질환별 효율적인 스포츠재활치료의 표준 차원 모델 확립

나. 대구 지역의 스포츠재활치료의 표준 교육 프로토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·포럼의 공동 개최

다. 교육활동

- ① 대구대학교 관련 학과 수업에 스포츠재활관련 교과목 개설 및 The Human Hospital 의 의료종사자의 출강
- ② The Human Hospital의 직원 교육을 위한 대구대학교 교원 출강
- ③ 대구대학교와 The Human Hospital간의 인턴쉽 프로그램운영

라. The Human Hospital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지원

- ① 대구대학교 교원 및 학생의 The Human Hospital 자원봉사활동 추진 및 장려
- ② 대구대학교 관련학과와 The Humane Hospital의 홈페이지 등 홍보 활동 지원

마. 시설활동

- ① 대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남산병원이용료 할인
- ② 워크숍 및 포럼개최를 위한 대구대학교 시설 이용
- ③ 재활트레이너 교육 및 실습을 위한 The Humane Hospital과 대구대학교 시설의 무료 이용

제3조(신의성실 및 호혜원칙) 이 협정서에서 정한 협력활동은 쌍방간의 신의성실 및 호혜 원칙에 따라 정한다.

제4조(비용부담) 본 협정서에 의해 일방 당사자가 추진하는 행위의 비용부담은 당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일방의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은 상호협의를 의한다.

제5조(효력)

가. 이 협정서는 쌍방 책임자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서의 효력은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하여 그 효력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종료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추진된 협력사업에 대하여서는 당해 협력사업의 종결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.

제6조(기타)

가. 본 협정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후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하도록 한다.
나. 본 협정서를 2부 작성, 날인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6. 4. 7

대구대학교

The Humane Hospital

이 용 두
총 장 이 용 두

김 상 근
병원장 김상근

김 훈
건강증진연구소장 김 훈

김 영 기
스포츠재활치료센터장 김영기

김 성 식
스포츠센터장 김성식